

행정자치부 훈계요구

제 목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지연 이행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

관 련 자 ① 원주시 ○○○○국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

(전 지방○○○○○) ○○○

② 원주시 ○○○○○과(전 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1. 7. 18.부터 2015. 2. 12까지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9. 27.부터 2015. 10. 7까지 각각 ○○과에서 감독책임자, 실무책임자로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과 관련한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를 처리하였다.

원주시에서는 2013. 5. 24. 민원인(주식회사 ○○○)으로부터 원주시 ○○동 0000-0외 0필지 지상에 있던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주유소 등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2013. 12 . 2.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 재수립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.

이에 대하여 민원인이 2014. 2. 28.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를 함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2014. 5. 15. 위 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재결 결과³²⁾를 통보(재결일 2014. 4. 28.)받았다.

「행정심판법」 제4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(羈束)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³³⁾³⁴⁾

그리고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‘민원사무 처리기준표’에 따르면 건축허가업무 처리기간은 7일로 되어 있다.

따라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 결과(재결서 정본)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했다.

또한 위 관서 ○○○○과에서는 2014. 5. 15. 위 위원회로부터 재결취지대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‘2014년도 제4회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’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날에 ○○○과에 재결취지대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(2004. 0. 00. ○○○과-0000호)을 통보하였다.

그런데도 위 관서(○○과)에서는 2014. 5. 15.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 결과를 통보를 받고도 민원인이 행정심판과 별도로 2014. 4. 14. 제기한 행정소송³⁵⁾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³⁶⁾로 재처분을 지연하였다.

이에 2014. 6. 3. 민원인이 ‘① 귀 시에서는 현재까지도 당사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을 행하지 않는 등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는바 당사는 행정심판법 제49조

32)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‘주유소 설치에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원주시의 반려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일 뿐만 아니라 막연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에 의한 처분으로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처분’이라고 함

33) 대법원 1988.12.13. 선고 88누7880 판결 참조

34)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서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음(헌법재판소 2014.6.26. 2013헌바122 판례, 1999.7.22. 98한라4 판례 참조)

35) 민원인은 2014. 2. 28. 춘천지방법원에 ‘원주시장이 2013. 12. 2. 민원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’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

36) 「행정심판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(羈束)하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할 수 없고 원주시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화 될 수 없음

에 따라 지체없이 건축허가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귀 시에 요청한다. ② 당사의 영업상 손실이 귀 시의 부당한 민원처리 지연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 바라며 2014. 6. 5.까지 건축허가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.’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,

위 관서(○○과)에서는 2014. 6. 11. ‘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’라는 민원회신을 하였고 이후 민원인이 2014. 6. 27. 소취하를 하자 2014. 7. 7. 민원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.

그 결과 민원인은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었는데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

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지연하여 민원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